

2024년 대학안전관리계획(안)

2024. 2.

전주대학교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6
1. 재난	7
① 자연재난	7
② 사회재난	10
2. 안전사고	12
① 대학 안전사고	12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16
③ 연구실사고	18
3. 감염병 확산	20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
4. 범죄	25
① 일반범죄	25
② 성범죄	27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30
① 산업재해	30
② 중대재해	34
6. 기타	37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37

목 차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39
Ⅳ.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45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55
Ⅵ.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9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60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62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63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따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학교 현장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재난관리태세와 재난유형별 상황관리체계 유지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수습능력 제고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전주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전 화	1577-7177	FAX	063-220-2464	홈페이지	https://www.jj.ac.kr
총장	박진배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이덕수 (직책: 총무처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비전임 포함)	현업업무직원	합계
10,528명	878명	1,413명	15명	12,834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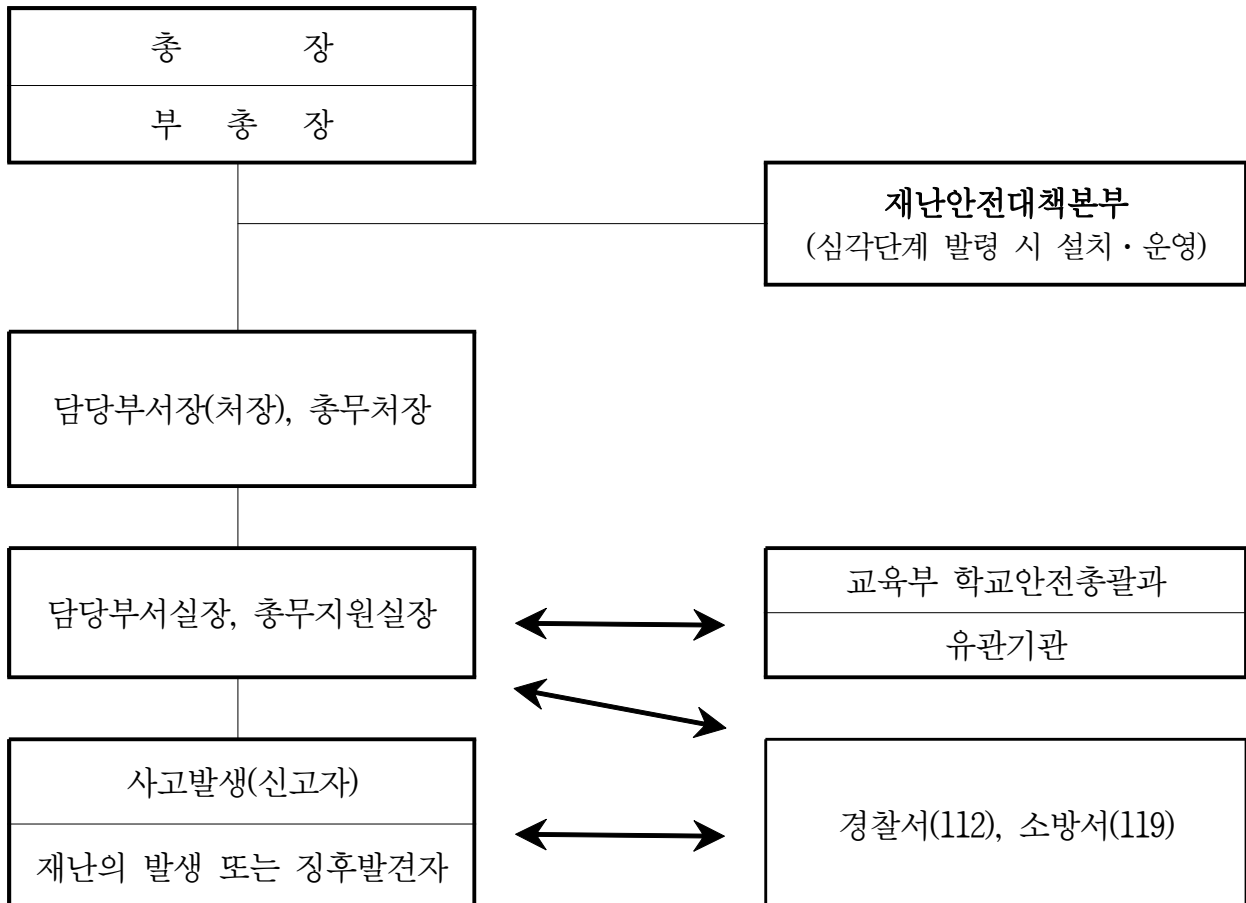
2 조직체계 현황

- 재난·안전 관리는 총괄부서(총무처)에서 중점관리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재난·안전 분야별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주관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총무처(총무지원실)	담당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총무지원실	시설지원실 학사지원실 학생지원실
	사회재난	시설지원실	총무지원실
2. 안전 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지원실 현장실습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시설지원실 총무지원실
	연구실 사고	시설지원실	총무지원실
	교육시설안전	시설지원실	총무지원실
3. 감염병	코로나 19	학생지원실	총무지원실 학사지원실 교무지원실 원격교육지원센터 정보통신지원실
4. 범죄	성범죄	인권센터	교무지원실 총무지원실 학생지원실
	일반범죄	학생지원실 교무지원실 총무지원실	시설지원실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설지원실	총무지원실
	중대재해처벌법	시설지원실	총무지원실
6. 기타	비상사태	총무지원실	예비군연대

□ 재난안전관리 체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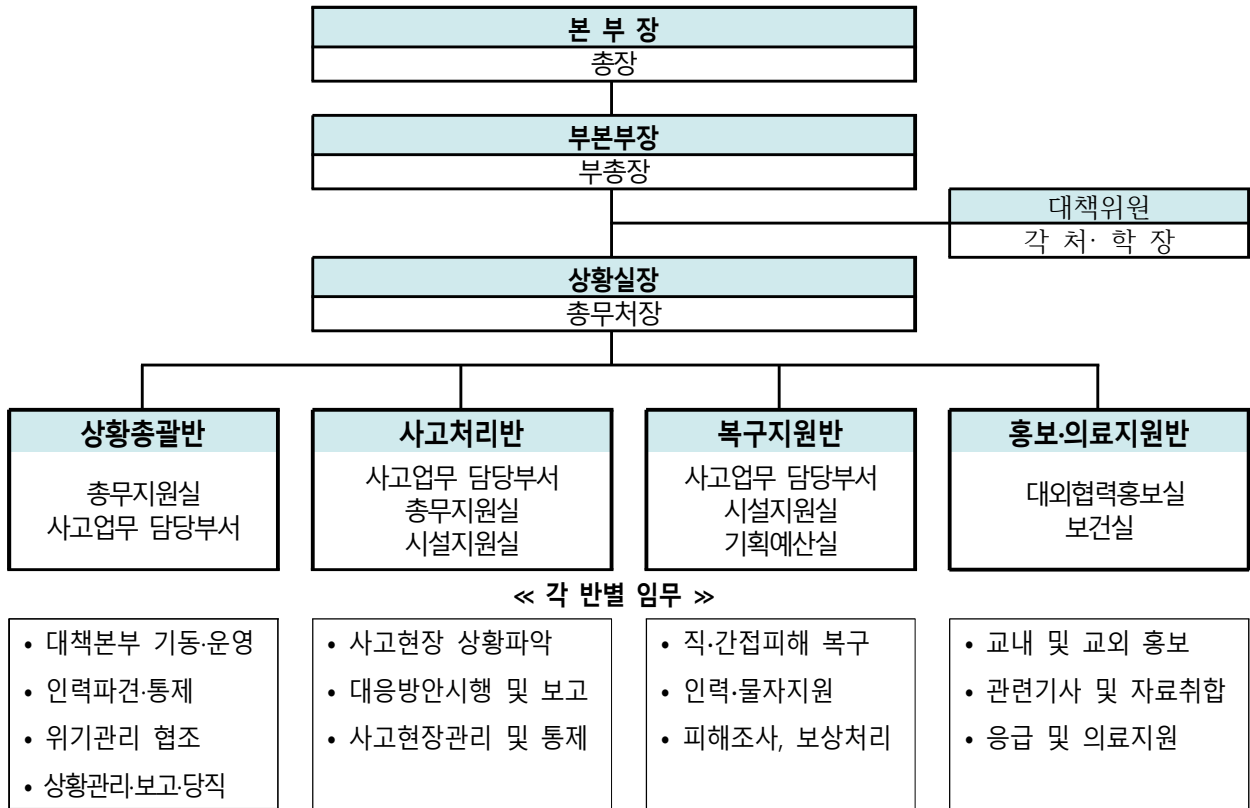
○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은 심각단계 발령 시 설치·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각 반 편성은 재난유형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편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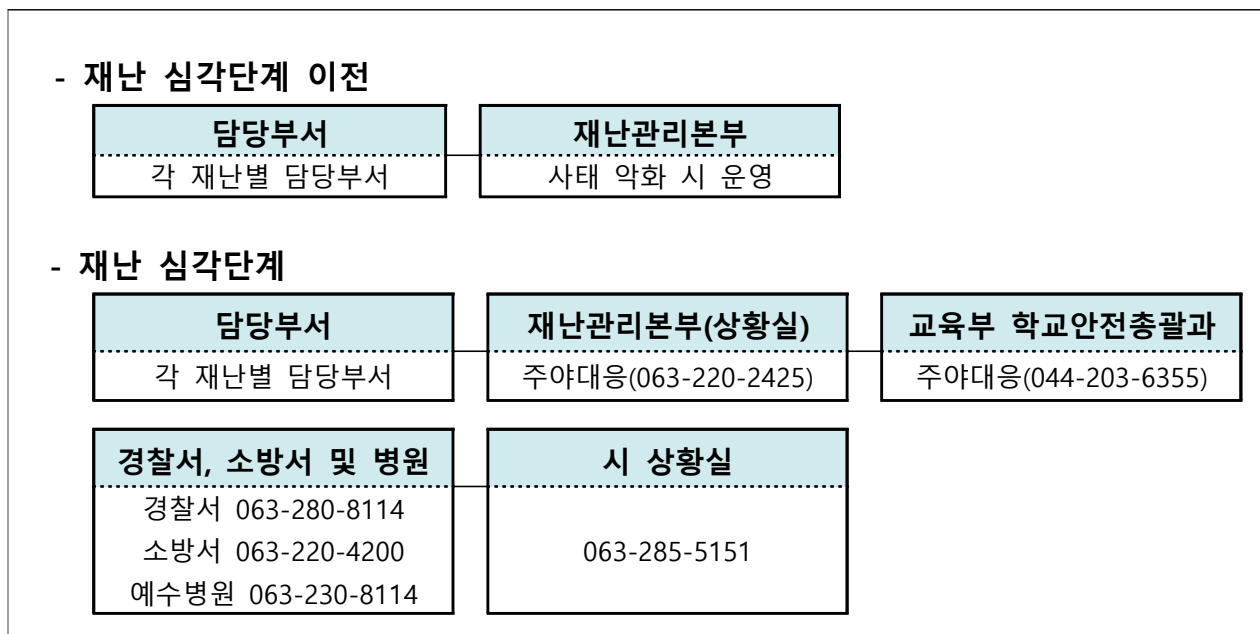
○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 재난의 예방·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 및 유관기관장 협조 요청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jhhan@jj.ac.kr	주관부서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협조부서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학사지원실	실장	서광수	063-220-2568, xcafe@jj.ac.kr	
학사지원실	과장	허헌	063-220-2134, gighean@jj.ac.kr	
학생지원실	실장	이용노	063-220-2161, ryong@jj.ac.kr	
학생지원실	과장	김승아	063-220-2819, miracle@jj.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각종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요령 및 학교 조치사항에 대해 사전 숙지
- 학교시설물 관리
 - 학교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요소 제거
 - 재해취약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 점검을 통해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조치
- 재난대비 비상대응체계 유지
 - 여름철·겨울철 빈발 재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보고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등·학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점검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기상·재난상황 및 학교안전 등을 고려하여 휴업 또는 학사운영조정을 결정
 - 학교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 실시
 -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근무편성 및 위험시설 접근금지 조치 실시
 - 보고체계 및 비상연락망 유지
 -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시설물 사전 점검, 담당부서 상황 모니터링, 비상연락망 점검, 주요 시설물 순찰 점검 강화 등

- **2단계** 경계단계: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및 상황 모니터링, 취약 및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비상연락망 유지, 유관기관(교육부, 전주시청, 완산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협의,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및 구호활동
 - 사망자 대책 수립
- 현장복구
 -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자연재난 방지 예산	-	-	-	-	-
계	-	-	-	-	-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주관부서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시설지원실	직원	김동현	063-220-2183, kdh0201@jj.ac.kr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협조부서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1	0	0	1
재산피해(백만원)		0	0	1	0	0	1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원인분석

○ 완산소방서 조사 결과

- 옥상 방수작업 중의 정전기에 의한 불꽃이 발생하여 인화물질(본드, 신나)에 화재 발생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

- 옥상 방수공사 시에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접지밴드 착용과 소화기를 배치하고, 인화물질과의 이격거리를 유지함
- 작업 전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 숙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사회재난 방지 예산	-	-	-	-	-
계	-	-	-	-	-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학생지원실	실장	이용노	063-220-2161, ryong@jj.ac.kr	주관부서
학생지원실	과장	김승아	063-220-2819, miracle@jj.ac.kr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한명인	063-220-2163, E21565@jj.ac.kr	
현장실습지원센터	과장	이재설	063-220-4611, ljsinmay@jj.ac.kr	협조부서
현장실습지원센터	직원	강채원	063-220-4615, krklike03@jj.ac.kr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 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관련 수칙 마련·시행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내 도로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본교를 출입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및 보행자에 적용한다.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행사 전 사전안전교육 진행, 행사계획서 제출(안전 계획수립, 점검 사항 확인)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집단활동을 주관하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조사를 통한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일 전까지 담당부서에 제출 후 승인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에서 주최하는 각종 교내·외 학생집단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등이 주최하여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학생집단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본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담당부서) 학생집단활동의 안전관리는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이 담당한다. 다만, 단과대학 내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단활동 안전관리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이 담당한다.

* (포함사항) 방문지역, 참가인원, 안전확인사항(보험, 차량, 숙박, 화재, 응급사항 대처 등)

※ 관련 매뉴얼: [별첨] 학생집단활동 안전교육 자료(안전교육 매뉴얼)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관련 부서(국제교류지원실)의 비상연락망(유무선)을 통한 상시 관리 및 대응

② 대응 · 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 · 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보고 수준 결정
- 학생집단활동 행사 사고발생 시 관련 서식(보고서)을 작성하여 안전관리 담당부서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즉각적인 위험성이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기간 내 협의에 착수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 · 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및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직원	김동현	063-220-2183, kdh0201@jj.ac.kr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교육시설 안전사고 방지 예산	5	5	5	15	
계	5	5	5	15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직원	임채균	063-220-3204, gooso12@jj.ac.kr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40	40	40	120	
노후 시약장 교체	30	30	30	90	
공제가입	10	10	10	30	
계	80	80	80	240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소모임 금지,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코로나19 방역 대책 수립 및 적용,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및 적용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유증상자는 관련 검사를 수검 후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출근 및 등교
-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자가격리

* 확진환자의 동거인, 밀접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격리 대상인 경우 등교, 출근을 금지하여야 하고, 수동감시대상인 경우 등교, 출근은 가능하나 스스로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시 등교, 출근하지 않도록 함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 격리 시, 등교(출근)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학생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실시간 강의 영상, 비대면 수업 영상, 과제물 대체 등)
- 직원은 공가 처리 및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통해 출결 및 근태관리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자가문진을 통한 확진 사례 예상, 접촉자 사전 파악, 신속한 검사 추진을 통한 학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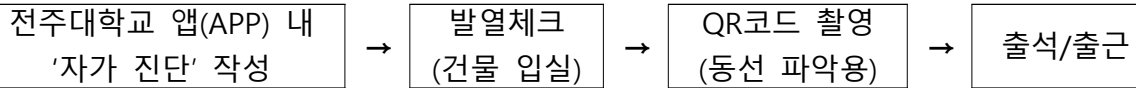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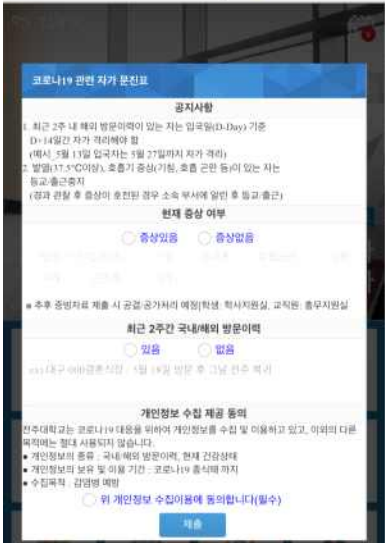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참고 자료 자가진단 실시 사항(대학 자체 프로그램)

▪ 등교 전 조치사항 이행



- 자가 진단(자가 문진표) 미 작성자는 웹 천잠(교직원) 또는 인스타(학생) 등 전주대학교 앱 내 추가메뉴 접근이 불가함
- 자가 진단을 작성하고 자가격리 대상자, 유증상자(발열, 호흡기증상 등)는 소속 부서에 보고 후 등교/출근 금지

1회 차(최초 진행 시)	2회 차 이후
	

참고 자료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체계

- 특이사항 발생 즉시 *소속부서 감염병관리자에게 전달
- 특이사항: 코로나19 관련 검사(간이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 PCR검사)를 진행한 경우, 유증상자, 자가 격리자 또는 확진자 등을 의미함
- 특이사항 발생 보고 체계

*소속부서 감염병관리자

구분	학생	직원	교원
감염병관리자	소속 학부/과 조교 및 학과장	소속 부서의 장	교무지원실장
	↓	↓	↓
보고 대상	학생지원실	총무지원실	교무지원실

참고 자료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요령

■ 상황별 대응 요령

순	상황	
1	교원, 학생 확진자 발생 시	직원 확진자 발생 시
2	① 확진 사실을 수업 담당 교원에게 알리고 ② 수업 참여자는 신속항원검사(또는 자가검진키트) 실시	① 확진 사실을 부서장에게 알리고 ② 동일 공간 내 근무자는 신속항원검사(또는 자가검진키트) 실시
3	학습권, 수업권 보장을 위한 대체 방안 실시	재택근무 등 대체 방안 실시
4	또한, 확진 사실을 코로나19 담당 부서(학생지원실)에 즉시 통보	

■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범위

- 확진자가 방문한 강의실 또는 사무실 중심으로 방역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중심으로 방역
- 해당 건물 내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방역

참고 자료

업무연속성계획(BCP) 발동 기준 및 주요 내용

■ 상황별 대응 요령

BCP 발동 기준			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	
①전체 방역상황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1단계 비상 계획 발동	학사	- 대면 - 실험·실습·실기 강좌 - 소규모(30명 이내) 이론 강좌 - 비대면 또는 원격: 나머지 강좌
②학내 감염상황	대학 확진자 비율 5% 내외 (1주 기준)		학내 주요기능	- 교직원 50% 재택근무 실시 -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 또는, 일 단위 재택근무 - 학내·외 행사 연기 - 교육활동 외 학내 잔류시간 최소화
			시설 이용	-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
①전체 방역상황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2단계 비상 계획 발동	학사	전체 강좌 비대면 또는 원격 운영
②학내 감염상황	대학 확진자 비율 10% 내외 (1주 기준)		학내 주요기능	- 교직원 50% 재택근무 실시 2~3일 단위 재택근무 또는, 주 단위 재택근무 - 학내·외 행사 연기 - 교육활동 외 학내 잔류시간 최소화
			시설 이용	- 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 -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학생	학생지원실	실장	이용노	063-220-2161, ryong@jj.ac.kr	주관부서
학생	학생지원실	과장	김승아	063-220-2819, miracle@jj.ac.kr	
교원	교무지원실	실장	최형운	063-220-2033, hwchoi@jj.ac.kr	
교원	교무지원실	과장	이동영	063-220-2131, ddonging@jj.ac.kr	
직원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직원	총무지원실	과장	강상현	063-220-2570, shkang@jj.ac.kr	협조부서
공통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3, jongh@jj.ac.kr	
공통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학과 동아리(경찰학과 캠퍼스폴리스) 및 지역 관공서(완산경찰서) 협력을 통한 정기 순찰, 예방 캠페인, 불법 카메라 점검 등 추진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및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 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전 구성원	인권센터	연구교수	김미라	063-220-2407, humanrights@jj.ac.kr	주관부서
	인권센터	교육조교	강서영	063-220-2406, humanrights@jj.ac.kr	
	인권센터	교육조교	마수인	063-220-2586, humanrights@jj.ac.kr	
교원 관련	교무지원실	과장	이용하	063-220-2131, toycube0565@jj.ac.kr	협조부서
직원 관련	총무지원실	과장	강상현	063-220-2570, shkang@jj.ac.kr	
학생 관련	학생지원실	과장	김승아	063-220-2819, miracle@jj.ac.kr	

□ 위험요인

- 전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장 제3조 2,3에 근거한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
- **(성희롱 행위)**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이로 인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차에 기반을 두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및 대응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성희롱·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대학 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폭력예방교육, 인권 교육 운영
- 성희롱·성폭력 범죄 예방 및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 성희롱·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후속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실시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등을 위한 학교 전 구성원 대상 실태 조사 실시

상담 단계	[심의대상 접수, 여행, 한려, 군운 등] 후기 상담 실시 피해자의 시건에의 응대 지원
조사 단계	개인적 해결 피해자 지원 상담 사건 종결 조사·심의 신고 접수 패선고연 고지 심의위원회 소집 및 개최 조사제시 여부 확인 조사 제시[미] 조사위원회 구성 및 소집 조사[진술 및 증거질할 확인] 피해자의 조사중지 의사 조사중지 조사 완료(조사결과보고서) 심의위원들에게 보고 심의위원회 소집 답사자간의 조정(응제) 사건 종결 조사제시 여부 확인 조사제시[부] 사건 종결 [심의결과에 대해 심의 하기] [의견에 동의결과 동의 및 사건종결]
심의 단계	
징계 및 후속 조치 단계	징계 요청 의결되었나? YES NO 징계 요청 징계위원회 개최(의결) 징계 처분 및 통지(피신고인) 징계 실행 사건 종결 후속조치(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등 결정조치 이행 관리)

※ 징계 요청은 대상별 각 협조부서에 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상담 및 사건 처리	11	7	5.46	23.46	교비
교육	9.99	10.1	10.1	30.19	교비+대학
기타 예방 및 대응활동	11.9	11.24	11.84	34.98	혁신비
계	32.89	28.34	27.4	88.63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직원	김동현	063-220-2183, kdh0201@jj.ac.kr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 위험요인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2	0	0	4	1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2	0	0	4	1
	계	0	2	0	0	4	1

□ 원인분석

○ 고용노동부조사 결과

- 원예작업에 사용하는 운반차에서 하차시에 적재함에서 떨어져 골절사고 발생
- 원예작업 시에 엔진톱을 사용하여 작업 중 지장물에 걸려 넘어짐(전도)사고 발생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기계 사용시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숙지

○ (보건조치)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안전관리비	10	20	20	50	
계	10	20	20	50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직원	김동현	063-220-2183, kdh0201@jj.ac.kr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 위험요인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0	10	10	20	
계	0	10	10	20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최진호	063-220-2155	협조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담당	김동규	063-220-2322, ddrcomkim@jj.ac.kr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중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중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민방위 훈련	0.252	0.252	0.36	0.864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DB손해보험	DB 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연구실안전공제보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AIG손해보험	AIG손해보험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2023.4.30.~2024.4.30.	-	9,016	29,896	12	8,246	-	-	일시납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학교시설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100,000	5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3,000	3,000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3,000	3,000	
교직원배상책임	대인	100,000	5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 준 연 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재산종합 보험	2023-07-14 2024-07-13		174,887	19,631	0	0	0	0	
2023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2023-07-14 2024-07-13		174,887	20	0	0	0	0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재산종합보험	피해 상황에 따른 유동적 보상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대인)	80,000	무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대물)	-	300,000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 준 연 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 험 료 (A)	학생 수 (B)	연간 총보 험료 (C)	보 험(공제)청구				비 고
						인적		물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22	연구 활동 중 사자 공제	2022-04-30 2023-04-29	2	4,562	9,461	0	0	0	0	
2023	연구 활동 중 사자 공제	2023-04-30 2024-04-29	1.5	5,000	7,706	0	0	0	0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200,000	
장해급여	200,000	200,000	
요양급여	2,000,000	2,000,000	
장의비	10,000	10,000	
입원급여	50	50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10,000	10,000	

5.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 준 연 도	보험(공제) 상 품 명	시작일 종료일	1대당 보 험 료 (A)	승강기 수 (B)	연간 총보 험 료 (C)	보 험(공제)청구				비 고
						인 적		물 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22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 험	2022-09-27 2023-09-27	45	18대	450	-	-	-	-	
2023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 험	2023-09-27 2024-09-27	32	19대	275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대인	200,000		
대물		10,000	

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조직 현황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전 구성원	카운슬링센터	센터장	하정	063-220-2921 hajung68@jj.ac.kr	주관부서
		연구교수	최경란	063-220-2062 beechae@jj.ac.kr	
		전문상담원	이나라	063-220-2367 dlskfk0532@jj.ac.kr	
		전문상담원	노경	063-220-2366 kyoung@jj.ac.kr	
		전문상담원	노현승	063-220-2079 bluaano@jj.ac.kr	
		전문상담원	박민경	063-220-2078 alsrudgkgk@jj.ac.kr	
학생 관련	학생지원실	실장	이용노	063-220-2161 ryong@jj.ac.kr	협조부서
		주임	김채린	063-220-2982 thanks@jj.ac.kr	

□ 지원 내용

구분	추진 내용
개인상담	■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1:1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적응기능을 회복시키고,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증진 ■ 자해/자살 및 정서조절, 대학생 적응, 진로, 대인관계, 이성문제 등 호소문제에 대한 해결 및 마음근력 유지 ■ 재학생의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 개입, 전임 및 상담인력 교육, 상담진행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
심리검사	■ 흥미, 적성, 성격 등에 대한 심층적 심리검사로 개인의 심리, 정서, 행동 상 나타나는 문제나 요인들에 대한 원인적 요인 탐색 및 자기이해 증진 ■ 다양한 심리검사 구비로 재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검사 서비스 진행 ■ 재학생의 보다 편리한 심리검사 실시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집단상담	▪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자기이해, 정서 및 스트레스 관리, 사회기술 및 대인관계 등 비슷한 어려움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전임 및 전문가와 함께 소그룹 집단상담을 통해 성장 ▪ 집단상담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 경험, 자기이해 및 자기수용,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
실태 조사	▪ 신입생·재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및 심리 정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지원 및 교육의 기초자료 마련
학교생활적응	▪ 마음지킴 캠페인을 통한 재학생의 마음건강 문제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심리서비스 홍보 지원을 통해 마음건강에 대한 민감성 향상 및 마음건강 인식개선, 심리서비스 접근성 강화
마음건강지원	▪ 자살예방교육을 통한 재학생의 정신건강 조기발견 및 예방 ▪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안정화 및 위기관리 지원 제공 ▪ MOU 체결 전문기관과의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학생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 제공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직원	김동현	063-220-2183, kdh0201@jj.ac.kr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3.04.06.	1	125	-
학생	2023.09.21.	1	97	-
교직원	2023.12.01	1	75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 기숙사내의 화재사고의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합동소방훈련	-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붕괴 사고 대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4.04	1	200	-
학생	2024.09	1	200	-
교직원	2024.05	1	100	-
교직원	2024.10	1	10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 기숙사의 화재대피훈련
합동소방훈련	▪ 상황별 화재대피훈련 및 초기진화 훈련 실시 ▪ 붕괴사고 시의 대응모의훈련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 ■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학생지원실	실장	이용노	063-220-2161, ryong@jj.ac.kr	주관부서
학생지원실	과장	김승아	063-220-2819, miracle@jj.ac.kr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한명인	063-220-2163, E21565@jj.ac.kr	협조부서
현장실습지원센터	과장	이재설	063-220-4611, ljsinmay@jj.ac.kr	
현장실습지원센터	직원	강채원	063-220-4615, krlike03@jj.ac.kr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 2023년 교육 · 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비고
학생	2023. 1. 19.	학생자치기구장 대상 안전 교육(학생집단활동) - 1차
학생	2023. 3. 30.	총학생회 봄 축제 사전 안전 교육
학생	2023. 4. 13.	학생자치기구장 대상 안전 교육(학생집단활동) - 2차
학생	2023. 5. 12.	총학생회 성년의 날 행사 사전 안전 교육
학생	2023. 5. 23.	중앙동아리연합회 축제 사전 안전 교육
학생	2023. 6. 22.	농촌봉사활동 사전 안전 교육
학생	2023. 7. 11.	국토대장정 사전 안전 교육
학생	2023. 9. 21.	총학생회 가을 축제 사전 안전 교육
학생	2023.	단과대학 별 행사(MT, 축제 등) 전 사전 안전 교육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외 활동 시 안전 유의 사항	▪ 차량 이동 시 유의 사항 및 사전 점검 ▪ 봉사활동 장소 사전 답사 및 숙박시설 안전사항 점검 ▪ 여름철 감염병(쯔쯔가무시병, 피부병 등) 관련 예방 사항 안내 ▪ 인근 보건소, 병원 등 비상연락망 확보
대내 활동 시 안전 유의사항	▪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 ▪ 관중 밀집도 최소화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 안내 ▪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 안내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행사 진행 전	1h		
교직원	행사 진행 전	1h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내·외 활동 시 안전 유의 사항 교육	▪ 차량, 숙박, 음식 등 안전 사고 유의 사항 안내 ▪ 행사 장소 및 이동 관련 사전 점검 ▪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 ▪ 인근 보건소, 병원 등 비상연락망 확보 ▪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 안내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직원	김동현	063-220-2183, kdh0201@jj.ac.kr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2023.06.27.	2h	14	-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교육	2023.06.27.	2h	14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의 중요성 - 안전공구의 올바른 착용법과 중요성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 작업별 안전수칙 숙지 및 안전공구 착용의 의무화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매분기별	2	15	-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매분기별	2	1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의 중요성 ▪ 안전공구의 올바른 착용법과 중요성 ▪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 작업별 안전수칙 숙지 및 안전공구 착용의 의무화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직원	임채균	063-220-3204, gooso12@jj.ac.kr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전반기	1회/년	1,100명	0
정기교육훈련	전/후반기	2회/년	5,300명	6,3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 안전교육 시행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전반기	1회/년	1,000	0
정기교육훈련	전/후반기	2회/년	5,000	6,300,000
특별안전교육훈련	-	-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전 구성원	인권센터	연구교수	김미라	063-220-2407, humanrights@jj.ac.kr	주관부서
	인권센터	교육조교	강서영	063-220-2406, humanrights@jj.ac.kr	
	인권센터	교육조교	마수인	063-220-2586, humanrights@jj.ac.kr	
교원 관련	교무지원실	과장	이용하	063-220-2131, toycube0565@jj.ac.kr	협조부서
직원 관련	총무지원실	과장	강상현	063-220-2570, shkang@jj.ac.kr	
학생 관련	학생지원실	과장	김승아	063-220-2819, miracle@jj.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분류	교육 시기	교육 횟수, 시간		인원
학생	대면, 실시간 비대면, 사이버 교육	2023. 3.-12.	대면, 실시간 비대면	25회 1회 2시간	5,869명
			사이버	1인 1회 2시간	
교직원	사이버 교육	2023. 6.-12.	1인 1회 4시간		1,299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육	▪ 고위직 맞춤형 성인지 교육 실시 ▪ 학과 및 단과대학 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 중앙동아리 및 농촌봉사활동 등 행사 사전 교육 실시 ▪ “비폭력대화” 집단 상담 실시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학생	4대폭력예방교육	1인 1회(1회 2시간)	전 구성원 대상
교직원	(온·오프라인 교육)	1인 1회(1회 4시간)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육	▪ 고위직 맞춤형 성인지 교육 실시 예정 ▪ 학과 및 단과대학 별 소규모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정 ▪ OT, MT 등 행사 사전 교육 실시 예정 ▪ 집단 상담 실시 예정

6.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최진호	063-220-2155, jinhoinok@jj.ac.kr	협조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김동규	063-220-2322, ddrcomkim@jj.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및 교직원	23.5.16.(화)	14:00~15:00	약 150여명	63,000원
	23.8.23.(수)	14:00~15:00	약 150여명	63,000원
	23.11.1.(수)	14:00~15:00	약 150여명	63,000원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민방위 훈련	■ 국민참여 민방공 대피훈련 ■ 을지훈련 연계 공습 대비 훈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및 교직원	민방위 훈련	2회	약150여명	240,000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민방위 훈련	■ 을지훈련 연계 공습 대비 훈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전주시청	063-285-5151		
완산구청	063-220-5114		
전북소방본부	063-280-3831		재능대응과
전주완산소방서	063-220-4230		방호구조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063-917-4016		고객지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76-0019		전북지역본부
전주완산경찰서	063-280-0179		생활안전과
전주예수병원	063-230-8114		응급실
전주시보건소	063-281-6210		보건행정과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소속기관
			소속단체,대학(교)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전주시청	063-281-5162		안전정책과
완산구청	063-220-5114		
전북소방본부	063-280-3831		재능대응과
전주완산소방서	063-220-4230		방호구조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063-917-4016		고객지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76-0019		전북지역본부
전주완산경찰서	063-280-0179		생활안전과
전주예수병원	063-230-8114		응급실
전주시보건소	063-281-6210		보건행정과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소속기관 소속단체,대 학(교)

□ 감염병 확산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전주시보건소	063-281-6216		감염병대응팀
전주시보건소	063-281-6249		감염병대응팀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경찰청	112		
여성긴급전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366	https://www.stop.or.kr/	
해바라기센터(전주)	063-278-0117	www.jb-onestop.or.kr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소속기관 소속단체,대 학(교)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전주시청	063-285-5181		중대재해예방과
전주완산소방서	063-220-4230		방호구조과
전주고용노동지청	063-240-3399		산재예방지도과
전주완산경찰서	063-280-0179		생활안전과
전주예수병원	063-230-8114		응급실
전주시보건소	063-281-6210		보건행정과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소속기관 소속단체,대 학(교)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국방부	1577-9090	
106여단	063-262-2113	지휘통제실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소속기관
			소속단체,대 학(교)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장	학사지원실	실장	서광수 063-220-2568, xcafe@jj.ac.kr	
		팀원	학사지원실	과장	허헌 063-220-2134, gighean@jj.ac.kr	
		팀장	학생지원실	실장	이용노 063-220-2161, ryong@jj.ac.kr	
		팀원	학생지원실	과장	김승아 063-220-2819, miracle@jj.ac.kr	
	② 사회재난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직원	김동현 063-220-2183, kdh0201@jj.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2. 안전사고	① 학안전사고	팀장	학생지원실	실장	이용노 063-220-2161, ryong@jj.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실	과장	김승아 063-220-2819, miracle@jj.ac.kr	
		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한명인 063-220-2163, E21565@jj.ac.kr	
		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과장	이재설 063-220-4611, ljsinmay@jj.ac.kr	
		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직원	강채원 063-220-4615, krklike03@jj.ac.kr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팀원	총무지원실	직원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직원	김동현 063-220-2183, kdh0201@jj.ac.kr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③ 연구실사고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직원	임채균 063-220-3204, gooso12@jj.ac.kr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주관부서
		팀장	학생지원실	실장	이용노 063-220-2161, ryong@jj.ac.kr	
		팀원	학생지원실	과장	김승아 063-220-2819, miracle@jj.ac.kr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지원실	과장	강상현 063-220-2570, shkang@jj.ac.kr	
		팀장	학사지원실	실장	서광수 063-220-2568, xcafe@jj.ac.kr	
		팀원	학사지원실	과장	허헌 063-220-2134, gighean@jj.ac.kr	
		팀장	교무지원실	실장	최형운 063-220-2033, hwchoi@jj.ac.kr	
		팀원	교무지원실	직원	장원영 063-220-2802, onezero@jj.ac.kr	
		팀원	원격교육지원센터	계장	홍태영 063-220-2402, redhong@jj.ac.kr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4. 범죄		팀장	정보통신지원실	실장	김경훈	063-220-2584, hcom@jj.ac.kr		
		팀원	정보통신지원실	직원	이병규	063-220-2983, byungkyu@jj.ac.kr		
	① 일반 범죄	학생	학생지원실	실장	이용노	063-220-2161, ryong@jj.ac.kr	주관부서	
		학생	학생지원실	과장	김승아	063-220-2819, miracle@jj.ac.kr		
		교원	교무지원실	실장	최형운	063-220-2033, hwchoi@jj.ac.kr		
		교원	교무지원실	과장	이용하	063-220-2131,toycube0565@jj.ac.kr		
		직원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직원	총무지원실	과장	강상현	063-220-2570, shkang@jj.ac.kr		
		공통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3, jongh@jj.ac.kr	협조부서	
		공통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② 성범죄	전 구성원	인권센터	연구 교수	김미라	063-220-2407,humanrights@jj.ac.kr	주관부서	
			인권센터	교육 조교	강서영	063-220-2406,humanrights@jj.ac.kr		
			인권센터	교육 조교	마수인	063-220-2586,humanrights@jj.ac.kr		
		교원	교무지원실	과장	이용하	063-220-2131,toycube0565@jj.ac.kr	협조부서	
		직원	총무지원실	과장	강상현	063-220-2570, shkang@jj.ac.kr		
		학생	학생지원실	과장	김승아	063-220-2819, miracle@jj.ac.kr		
	5. 산업 재해 및 중대 재해	① 산업 재해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직원	김동현	063-220-2183, kdh0201@jj.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② 중대 재해	팀장	시설지원실	실장	이종화	063-220-2181, jongh@jj.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문진영	063-220-2182, moon1013@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계장	이선재	063-220-2486, leesj@jj.ac.kr	
			팀원	시설지원실	직원	김동현	063-220-2183, kdh0201@jj.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 jojo12136@jj.ac.kr				
6. 기타	① 비상 사태	팀장	총무지원실	실장	한진연	063-220-2141, jhhan@jj.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지원실	주임	조강주	063-220-2425,jojo12136@jj.ac.kr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최진호	063-220-2155	협조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담당	김동규	063-220-2322,ddrcomkim@jj.ac.kr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1. 재난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0	0	1	0	0	1
		재 산피해(백만원)		0	0	1	0	0	1
		인명 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0	2	0	0	4	1
		재 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 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2	0	0	4	1
			계	0	2	0	0	4	1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1. 재 난	② 사회 재 난	사회재난 방지 예산	20	20	20	60
		계	20	20	20	60
2. 안전 사고	② 교육 시설 안전 사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방지 예산	5	5	5	15
		계	5	5	5	15
	③ 연구실 사고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40	40	40	40
		노후 시약장 교체	30	30	30	30
		공제가입	10	10	10	10
		계	40	40	40	120
4. 범죄	② 성범죄	상담 및 사건 처리	11	7	5.46	11
		교육	9.99	10.1	10.1	9.99
		기타 예방 및 대응활동	11.9	11.24	11.84	11.9
		계	40	40	40	40
5. 산업 재해 및 중대 재해	① 산업 재해	안전관리비	10	20	20	50
		계	10	20	20	50
	② 중대 재해	중대재해 관련	0	10	10	20
		계	0	10	10	20